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

## 보호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신 종 갑 의원)

의안 번호	24-14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4. 2. .

발의자: 신종갑, 고병준, 권인순, 안미자,  
이상원, 장정희, 차해영, 채우진,  
한선미

### 1. 제정이유

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,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,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(안 제4조)
- 나. 장애인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예산의 지원(안 제6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비밀 준수의 의무(안 제8조)

### 3. 관계법령

- 가.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, 제61조

나.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4. 2. 13. ~ 2. 19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장애인 대상 범죄”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.
3. “장애인 거주시설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향상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사업 등)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

진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신고 체계 마련
2.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
3.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

제5조(장애인 시설 점검)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.

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

제6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마포구 관할 경찰서, 교육기관,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·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·

상담·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,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장애인복지법

[시행 2023. 11. 3.] [법률 제19400호, 2023. 5. 2., 일부개정]

**제59조의10(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
2.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·교육·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
3.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4.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(이하 “피해장애인”이라 한다)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
5.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등에 대한 지원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

**제61조(감독)**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·장부, 그 밖의 서류를 조사·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담당자,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

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## 사회복지사업법

[시행 2023. 7. 14.] [법률 제19453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

**제51조(지도·감독 등)**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·감독을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,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8. 12. 11.>

③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도·감독·회계감사 등을 한다. 이 경우 지도·감독·회계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8.

12. 11.>

④ 제3항에 따른 지도·감독·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도·감독·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·질문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⑥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도·감독·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, 처분사유,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1. 26., 2017. 10. 24., 2018. 12. 11.>

⑦ 지도·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·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2. 1. 26., 2018. 12. 11.>

[전문개정 2011. 8. 4.]

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5조(장애인 시설 점검)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한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장애인사회보장과 박소연
연 락 처	02-3153-8887